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62호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1**”을 “**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제항만 국장**”을 “**경제항만혁신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명, 지역대표 2명**”을 “**3명, 지역대표 3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u></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u>11</u>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의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임명 또 는 위촉한다.</p> <p>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 장, <u>경제항만국장</u>, 문화관광 국장, 복지환경국장, <u>건설교 통국장</u></p> <p>2. 위촉직 위원 : 시의원 3명, 재정분야 대학교수 <u>2명</u>, 지역 <u>대표 2명</u></p> <p>④ (생 략)</p>	<p><u>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u></p> <p>제3조(구성) ① ----- ----- <u>13</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u>경 제항만혁신국장</u>----- ----- <u>안전건설국장</u></p> <p>2. ----- ----- <u>3명</u>, 지역대표 <u>3명</u></p> <p>④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 1763호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폐지조례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폐지에 따라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64호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군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수”란 다른 회계·기금 등에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자금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2. “예탁”이란 일반·특별회계, 다른 기금 등에서 자금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계정구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

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여유자금을 예탁한 각종 회계·기금의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운용한다.

-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기금운용 수익금
-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재정안정화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출연하지 않을 수 있다.

-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 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③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2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4.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5.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⑤ 1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또는 긴급한 재난 및 재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예탁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회계·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해당 회계·기금운용관에게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 ①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된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③ 예탁·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예수일의 시금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회계·기금의 특성, 통합기금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회계·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예탁금의 상환규정) ① 각 회계·기금운용관은 예탁기한 전에 예탁한 자금을 상환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회계·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통합기금의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회계·기금운용관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하며, 이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통합기금의 용자) ① 통합기금을 용자하고자 하는 때에 시장은 용자받은 기관의 장과 용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통합기금을 용자 받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용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기금 용자금 관리카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용자기간) ① 시장은 기금을 용자 하는 경우, 용자기간은 예탁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② 시장은 용자받은 기관의 자금사정상 용자기간 만료일까지 용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용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용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9조에서 정한 용자약정에 의한다.

② 용자받은 기관이 용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 연체대출 이율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용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④ 용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용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⑤ 용자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시금고 영업일에 준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를 위하여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
-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3조(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통합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② 통합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의 지정) ① 시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 자치행정국장
- 2. 분임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 2. 기금출납원 : 예산계장

②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15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 12. 31.로 한다. 존

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군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지 1부터 별지 5까지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과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 을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②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 ③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 ④ 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 ⑤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 ⑥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 ⑦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을 “「군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으로 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65호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군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군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의 개정) 군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의 개정)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의 개정)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의 개정)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 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의 개정) 군산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의 개정)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7조(「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군산시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9조(「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의 개정) 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0조(「군산시 건축 조례」의 개정)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1조(「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2조(「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군산시 도로명주소

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3조(「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군산시 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제1조)

【군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u>군산시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신 · 구조문대비표(제2조)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u>군산시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신 · 구조문대비표(제3조)

【군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 <u>군산시 재무회계 규칙</u> 」의 예에 따른다.	제19조(준용) -----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신·구조문대비표(제4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략)</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u>」-----.</p>

신·구조문대비표(제5조)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군산시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 및 「<u>군산시 재무회계규칙</u>」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p>	<p>제31조(준용) -----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u>」----- -----.</p>

신 · 구조문대비표(제6조)

【군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 <u>군산시 재무회계 규 칙</u> 」을 준용한다.	제3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신 · 구조문대비표(제7조)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의 출납) ①기금의 출 납은 <u>군산시재무회계규칙</u> 을 준 용하고 기금관리 및 집행에 관 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관 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기금의 출납) ①-----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제8조)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u>군산시재 무회계규칙</u> 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기금의 회계관리)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u> 」--.

신 · 구조문대비표(제9조)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④ (생략) ⑤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 <u>군산시재무회계규칙</u> 」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신 · 구조문대비표(제10조)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 <u>군산시재무회계 규칙</u> 」을 준용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신 · 구조문대비표(제11조)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회계관리) ① (생략) ②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 <u>군산시 재무회계 규칙</u> 」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수입, 지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회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u> 」----- -----.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 <u>군산시 재무회계 규칙</u> 」을 준용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 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신 · 구조문대비표(제12조)

【군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u>군산시재무회계규칙</u> 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금의 회계관리)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신 · 구조문대비표(제13조)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준용규정) 군산시 어린이날 기념 민간보조사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 <u>군산시 재무회계 규칙</u> 」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규정) -----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신 · 구조문대비표(제14조)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집행·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 <u>군산시 재무회계 규칙</u> 」을 준용한다.	제4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신 · 구조문대비표(제15조)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관리) ① ~ ④ (생략) ⑤기금의 출납은 <u>군산시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신 · 구조문대비표(제16조)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관리) ① ~ ④ (생략) ⑤기금의 출납은 <u>군산시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제53조(준용)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 <u>군산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u> 」 및 「 <u>군산시재무회계규칙</u> 」을 준용한다.	제53조(준용) -----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신 · 구조문 대비표(제17조)

【군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 등) ①·② (생략) ③제2항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한 주민지원기금 집행은 「 <u>군산시 재무회계 규칙</u> 」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사업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 기금운용,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
제9조(회계관리) ① (생략) ②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u>군산시재무회계규칙</u> 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의 수입, 지출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회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신 · 구조문 대비표(제18조)

【군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u>군산시재무회계규칙</u> 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신 · 구조문대비표(제19조)

【군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u>군산시재무회계규칙</u>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준용)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신 · 구조문대비표(제20조)

【군산시 건축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치금) ① · ② (생 략) ③ 예치금은 「 <u>군산시 재무회계 규칙</u>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 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제2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치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대비표(제21조)

【군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 <u>군산시 재무회계 규칙</u> 」을 따른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신 · 구조문대비표(제22조)

【군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원인자부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 <u>군산시 재무회계규칙</u> 」에 따라 관리 및 집행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신 · 구조문대비표(제23조)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 「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u>군산시재무회계규칙</u>」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0조(준용 등) ----- ----- ----- ----- 「<u>군산시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66호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법 시행령**”으로, “**지방자치단체계약심의위원회**”를 “**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로, “**영제58조제2항, 제63조**”를 “**영제57조제2항, 제59조, 제60조**”로, “**상한금액 및**”을 “**및**”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과 위원장 1인**”을 “**1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있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을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으로, “직무”를 “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대상은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규모이상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내용의 특수성”을 “내용의 특수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시장은 군산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간사는 계약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위촉직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 한다.

- 1. 삭제
- 2. 삭제
- 3. 삭제
- 4. 삭제
- 5. 삭제
- 6. 삭제
- 7. 삭제
- 8. 삭제
- 9. 삭제

제13조제1항 단서 중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을 “위원회 관련”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	
	여 비	민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관계 전문가	심사 또는 자문비	200,000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지급의예외)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 등을 비용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여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8조제2항,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같은법 시행령</u>----- ----- <u>군산시 계약심의위원회</u>----- ----- ----- <u>영제 57조제2항, 제59조, 제60조</u>----- ----- --- <u>및</u> ----- ----- ----- .</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u>1인</u>과 위원장 <u>1인</u>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u></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 <u>1인</u>----- ----- ----- .</p> <p>② <u>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u></p>

현행	개정안
<p><u>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u></p>	<p><u>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u></p>
<p>1. 「<u>고등교육법</u>」에 의한 대학에서 <u>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u></p>	<p>-. <삭 제></p>
<p>2. <u>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u></p>	<p><삭 제></p>
<p>3.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u></p>	<p><삭 제></p>
<p>4. 「<u>건설기술관리법</u>」에 의한 <u>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u></p>	<p><삭 제></p>
<p>5. <u>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u></p>	<p><삭 제></p>
<p>6. <u>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u>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지식이 있는 자</u></p>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②위원중 <u>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u>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u>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u> 2. <u>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u> 3. <u>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u> 	<p>제3조(임무 및 임기) ①----- ----- <u>사무</u>----- ----- <u>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u>----- - <u>직무를 대행하고 미리 직무대행 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u>---.</p> <p>②--- <u>당연직 위원</u>----- ----- -----.</p> <p>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u>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 대상은 영 제10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규모이상을 말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4. <u>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u></p>	<p><삭 제></p>
<p>5. <u>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신 설></p>	<p><삭 제></p>
<p>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p>	<p>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생 략)</p> <p>2. <u>기타</u>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p>	<p>③----- ---.</p> <p>1. (현행과 같음)</p> <p>2. <u>그 밖에</u> ----- ----- --</p>
<p>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후단 신설></p>	<p>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p> <p><u>다만 영 제107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할 수 있다.</u></p>
<p>②·③ (생 략) <신 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소위원회) ① (생 략)</p> <p>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u>내용의 특수성을</u>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p> <p>③ ~ ⑦ (생 략)</p> <p>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u>시장은 군산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u></p>	<p><u>되, 간사는 계약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u></p> <p>제6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내용의 특수성</u> ----- ----- .</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p>⑧ ----- ----- <u>간사는 계약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이 된다.</u></p>
<p>제11조(위원의 해촉) <u>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u></p> <p>1. <u>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u></p> <p>2. <u>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u></p>	<p>제11조(위원의 해촉) <u>시장은 위원이 위촉직 위원이 영 제106조의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u></p> <p>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3. <u>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u></p> <p>4. <u>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u></p>	
<p>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감독대상 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이 경우 그상한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u> 2. <u>배수로 설치공사</u> 3. <u>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u> 4. <u>보안등공사</u> 5. <u>보도블럭 설치공사</u> 6. <u>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u> 7. <u>마을회관공사</u> 8. <u>공중화장실공사</u> 9.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u> 	<p>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감독대상 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의 공사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p>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p>	<p>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p>

현 행	개 정 안
<p>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u>계약심의위원회</u>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생 략)</p>	<p>----- ----- ----- ----- <u>위원회</u> 관련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67호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품은”을 “물품의”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물품관래”를 “물품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칙으로 정한다.”를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효률적”을 “효율적”으로 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수 책정 물품”을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관서당경비”를

각각 “일반운영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라북도의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군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를 각각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하나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를 “제16조”로, “1에”를 “어느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를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18조제1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12조”를 “제9조”로, “정수물품에”를 “정수 책정 물품에”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영 제90조에 따라 시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제28조”를 “제27조”로, “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을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으로, “때에는규칙”을 “때에는 규칙”으로 한다.

제30조 중 “5일이내에그”를 “5일이내에 그”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32조”를 “제30조”로 한다.

제32조 중 “제33조”를 “제31조”로 한다.

제33조 중 “제32조 내지 제43조”를 “제30조 내지 제32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물품은 효율적이고</u>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물품의</u> ----- -----.</p>
<p>제2조(관리책임) ①·② (생략)</p> <p>③시장은 <u>물품관</u>래에 필요하다면 각 관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u>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조(관리책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물품관리</u>----- ----- -----.</p> <p>④----- ----- ----- 「<u>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u>」(이하 “<u>규칙</u>” 이라 한다.)</p>
<p>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u>효율적인</u>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p> <p>1.·2. (생략)</p> <p>② (생략)</p>	<p>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u>효율적</u>----- ----- ----- ----- -----.</p> <p>1.·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p>	<p>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p>

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 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 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

- 재무관-----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 물품관
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정수관리대
상물품-----

-----.

②재무관-----

-----.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일반운영비-----
-----.
②----- 일반운영
비-----

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
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
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
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
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
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후 전라
북도의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
집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
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

-----.

③일반운영비-----

-----.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 군산시 기부심사위원회
(이하 “기부심사위원회” 라
한다)-----
-----.

②----- 기부심사위원
회 -----
-----.

③기부심사위원회-----

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생략)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 8.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 5. (생략)

③ (생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어느하나-----

-----.

1. ~ 8. (현행과 같음)

②-----
----- 어느하나에-----

-----.

1. ~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제16조

----- 어느하나
나에 -----

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 4. (생략)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판매가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어느 하나-----
-----.

1. (현행과 같음)

2. 둘 이상 -----

3. · 4. (현행과 같음)

④-----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

⑤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생략)

⑦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 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생략)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8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생략)

제24조(물품출납원 장부) ① (생략)

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

⑥ (현행과 같음)

⑦재무관-----

-.

⑧ (현행과 같음)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제17조

제1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제22조-----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물품출납원 장부) ① (현

행과 같음)

②-----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④ (생략)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
(과장이 있는 관서 포함)이, 기
타 관서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
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8조의 검사를 집
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
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
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
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
야 한다.

②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기

제9조----- 정수 책정
물품에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라 시장은 검사
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
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
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
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
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
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7조-----
----- 물품관
리관 등-----

②-----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서의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

----- 제31조

-----.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 제30조 내지 제32조-----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68호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0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제20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함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고 단, 3급 관사의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금지 지역(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 이하 “도서지역”이라 함)의 관사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5호 및 제7호 중 “관사”를 각각 “관사·3급 관사중 도서지역의 관사”로 한다.

제6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 7.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제20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u>관리위탁 기간의 갱신</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0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생략)</p> <p><신설></p>	<p>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현행과 같음)</p> <p>제20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u>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u></p> <p>1. <u>사업계획서</u></p> <p>2. <u>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u></p> <p>3. 「<u>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u></p>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삭 제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

2.-----
 -----서로 맞
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

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

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
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5. ~ 10. (생략)

제44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
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
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
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
상의 건폐율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
음과 같이 해당하는 경비는 예
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보일러 운영비(다만, 1급 관
사에 한함)

5. ~ 10. (현행과 같음)

제44조(청사의 부지) <삭제>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

----- 있고 단, 3급 관
사의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
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8조제2항에 따른 근무지 이탈금
지 지역(연륙되지 않은 도서지
역, 이하 “도서지역”이라 함)
의 관사에 한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 관사
· 3급 관사중 도서지역의 관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69호

군산시 교복 지원 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교복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70호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설시장 입점상인들의 입점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허가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할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을 “(사용허가의 취소와 재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의 규정에 따라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수 없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관련 법령, 조례 및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상당한 금액은 시설복구에 소요되는 금액(표준설계비 등 적용)으로 정하고, 원상복구시 사용자는 군산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며, 공설시장을 관리·운영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시장 관리·운영의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 1. 관련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공설시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설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공설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 2. 유통·경영·경제학계·소비자·시민단체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 3. 공설시장 상인대표 2명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 및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2. 위원이 6개월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공설시장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1. 공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
 - 2. 공설시장의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 3. 경영전략 등 선진 공설시장의 경영기법의 도입에 관한 사항
 - 4. 공설시장내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사항
 - 5. 입점품목 및 사용자 선정방식
 - 6. 그 밖에 공설시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설시장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허가신청) ① ~ ②(생략)</p> <p>③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u>군산시장에게 시장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u> <단서 신설></p> <p>④ ~ ⑥ (생략)</p>	<p>제5조(사용허가신청) ① ~ ②(현행과 같음)</p> <p>③ ----- ----- ----- . <u>다만, 공설시장 입점상인들의 입점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군산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임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허가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할수 있다.</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① <u>군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u> <후단 신설></p> <p>1. <u>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u></p> <p>2. ~ 9. (생략)</p>	<p>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재계약) ① ----- ----- ----- <u>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7의 규정에 따라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수 없다.</u></p> <p>1. <u>관련 법령, 조례 및 허가조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u></p> <p>2. ~ 9. (현행과 같음)</p>
<p>제17조(배상책임) (생략)</p>	<p>제17조(배상책임) ① (현행 제목</p>

<신 설>

제18조(설비복구)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제2항의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군산시장이 정한다.

제2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②
(생 략)

<신 설>

③·④ (생 략)

<신 설>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상당한 금액은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표준설
계비 등 적용)으로 정하고, 원
상복구시 사용자는 군산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설비복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
을 받으며, 관련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며, 공설시장을 관리·
운영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
시장 관리·운영의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련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21조(공설시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공설시장의 공공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공설시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국장,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유통·경영·경제학계·소비자·시민단체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3. 공설시장 상인대표 2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공무원 및 시의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 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신 설>

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 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이상 장기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안전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공설시장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공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

2. 공설시장의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

3. 경영전략 등 선진 공설시장의 경영기법의 도입에 관한 사항

4. 공설시장내 시설개선을 포함한 환경개선사항

5. 입점품목 및 사용자 선정방식

6. 그 밖에 공설시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설시장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계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

<p><u>제21조</u> · <u>제23조</u> (생략)</p>	<p><u>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u> <u>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 · 시간 ·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제25조 ~ 제27조 (현행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와 같음)</u></p>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71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제2조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국내복귀기업이 해당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3 본문 중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를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 5 및”으로 한다.

제18조의4 본문 중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를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 5 및”으로 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창업기업 지원)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으로 군산시에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u>“상시고용인원” 이라 함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 또는 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u></p> <p>가.·나. (생략)</p> <p>7. ~ 28. (생략)</p> <p><u><신 설></u></p> <p>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② (생략)</p> <p>③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다만, 존</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상시고용인원” 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u></p> <p>가.·나. (현행과 같음)</p> <p>7. ~ 28. (현행과 같음)</p> <p>29. <u>“국내복귀기업” 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u></p> <p>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2025년 12월 31일</u>-----.</p>

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 ③ (생략)

<신설>

제18조의3(고용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채용하여 항상 고용하는 경우 20인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명당 월30만

 -----.

 -----.

제18조(국내기업 이전비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국내복귀기업이 해당 기업의 본사·공장·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3(고용보조금) -----
 -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

 -----.

 -----.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 내지 조례 제18조의2 및 조례 제1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시내거주자를 20명 이상 신규채용하여 항상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명당 월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18조의4(교육훈련보조금) -----
-----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 5 및 -----

-----.

제18조의5(창업기업 지원) 설립된 지 3년 미만의 법인으로 군산시에 3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산업용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72호

군산시 산업용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산업용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산업용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업용지 조성사업”을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군산시산업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를 “군산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용지조성공사비, 부대시설비, 산업용지”를 “산업단지조성공사비, 부대시설비, 산업단지”로, “정산금 기타 산업용지 조성”을 “정산금, 기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로 한다.

제5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산업용지조성사업비</u> <u>특별회계 설치 조례</u></p> <p>제1조(설치) 군산시 <u>산업용지 조성사업</u>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u>군산시산업용지조성사업비</u> <u>특별회계</u>를 설치한다.</p> <p>제3조(세입·세출) ① (생 략)</p> <p>②이 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u>산업용지조성공사비</u>, 부대시설비, <u>산업용지</u> <u>조성</u>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기채이자, <u>정산금</u> 기타 <u>산업용지</u> <u>조성</u>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p> <p>제5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0년 12월 31일까지</u>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u>군산시 산업단지조성사업비</u> <u>특별회계 설치 조례</u></p> <p>제1조(설치) ---- <u>산업단지 조성사업</u>----- <u>군산시산업단지조성사업비</u><u>특별회계</u>-----.</p> <p>제3조(세입·세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산업단지조성공사비</u>, 부대시설비, <u>산업단지</u> ---- ----- <u>정산금</u>, 기타 <u>산업단지</u> <u>조성</u> 및 <u>관리</u>-----.</p> <p>제5조(존속기간) ----- ---- <u>2025년 12월 31일</u>----- ----- -----.</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73호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8조(존속기간) ----- --- <u>2025년 12월 31일</u>----- ----- -----.</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74호

군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활성화 시책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시장은 시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모색하고, 우선구매제도와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중앙회(그 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75호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된 기금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76호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기금의 조성기간은 2025.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12.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금의 조성)</p> <p>③기금의조성기간은2020.12.31.까지로 한다</p>	<p>제2조(기금의 조성)</p> <p>③기금의조성기간은<u>2025.12.31.까지로 한다</u></p>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0.12.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기금의 존속기한)기금의 존속 기한은 <u>2025.12.31.까지로 한다</u>.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조례 제1777호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78호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를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를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소하천이라 함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500원미만”을 “2,000원 미만”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

였을 경우

②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잔여 점용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4. 유수의 점용	<p>가. 전기사업 년액 m^2/Sec당 100,000원 또는 이론마력당 200원까지의 율로서 계산한 액</p> <p>나.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인수 포함)</p> <table border="0"> <tr><td>관경 25m/m이하 월액</td><td>5,000원</td></tr> <tr><td>관경 50m/m이하 월액</td><td>20,000원</td></tr> <tr><td>관경 75m/m이하 월액</td><td>30,000원</td></tr> <tr><td>관경 100m/m이하 월액</td><td>50,000원</td></tr> <tr><td>관경 200m/m이하 월액</td><td>60,000원</td></tr> <tr><td>관경 300m/m이하 월액</td><td>80,000원</td></tr> <tr><td>관경 400m/m이하 월액</td><td>110,000원</td></tr> <tr><td>관경 500m/m이하 월액</td><td>140,000원</td></tr> <tr><td>관경 600m/m이하 월액</td><td>190,000원</td></tr> <tr><td>관경 700m/m이하 월액</td><td>250,000원</td></tr> <tr><td>관경 800m/m이하 월액</td><td>300,000원</td></tr> </table> <p>자연취수 및 801m/m 이상은 월 최대취수 가능량을 산정하여 1,000세제곱미터당 100원씩 적용</p> <p>※동일인이 동일 지역에서 동일 목적으로 수개의 취수관으로 취수한 경우 점용료 등은 관별 최대 취수량을 산정 합산하여 전기사업기준 해당의 점용료 등 적용</p> <p>다. 농업용수 0.05~0.5m^2/Sec까지 연액 10,000원 0.5m^2/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p>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이하 월액	20,000원	관경 75m/m이하 월액	30,000원	관경 100m/m이하 월액	50,000원	관경 200m/m이하 월액	60,000원	관경 300m/m이하 월액	80,000원	관경 400m/m이하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이하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이하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이하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이하 월액	300,000원
관경 25m/m이하 월액	5,000원																						
관경 50m/m이하 월액	20,000원																						
관경 75m/m이하 월액	30,000원																						
관경 100m/m이하 월액	50,000원																						
관경 200m/m이하 월액	60,000원																						
관경 300m/m이하 월액	80,000원																						
관경 400m/m이하 월액	110,000원																						
관경 500m/m이하 월액	140,000원																						
관경 600m/m이하 월액	190,000원																						
관경 700m/m이하 월액	250,000원																						
관경 800m/m이하 월액	300,000원																						
5. 지하의 우수 채취	제4호에 준한다.																						
6. 배수(주수)	<p>가. 공업용수의 배수(주수) 월10,000m^2~200,000m^2까지 월액 20,000원 1,000m^2 증가시마다 50원 가산</p> <p>나. 기타용수의 배수(주수) 월 10,000m^2~200,000m^2까지 월액 15,000원 1,000m^2 증가시마다 50원 가산</p> <p>※단, 농업용수 · 일반댐발전용수 · 월 1,000m^2미만은 제외한다.</p>																						

구 분	점 용 료 산 정 기 준
<p>7. 토석, 모래, 자갈 등의 소하천 산출물 채취</p>	<p>가. 시장이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등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p> <p>나. 가목의 조사가 없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치</p> <p>※ 가목 조사는 2개지역이상에서 실시 매년초에 당해 년도에 적용할 사용료를 시장이 조정하여 고시한다.</p> <p>다만,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감액 조정할 수 있다.</p>
<p>8. 죽목, 갈대, 목초 등의 채취</p>	<p>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한다.</p>
<p>9. 기타의 점용 및 사용</p>	<p>전 각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p>

[별표 2]

점 용 료 등 의 감 면 기 준 표(제4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 면 율
1. 재응급 복구를 위한 경우	100%
2.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공사 및 기타 소하천등 관리를 위한 경우	100%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사	100%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00%
5. 소하천등의 자연 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우수점용의 경우	100%
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
7. 농지개량조합의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농업용수 이외의 목적은 제외)	100%
8.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비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 · 징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u>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u>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u>소하천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지역으로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하고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u></p> <p>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 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u>500원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u></p> <p>② ~ ⑤ (생략)</p>	<p><u>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 징수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u>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u>소하천이라 함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으로서 법 제3조의3에 따라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u></p> <p>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 ----- <u>2,000원 미만</u>----- ----- ----- ② ~ ⑤ (현행과 같음)</p>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 ② (생 략)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
 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
 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
 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
 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등
 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 ②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
 부한 점용료 등을 잔여 점용기
 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79호

군산시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군산시 버스 승강장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 및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스 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3. “버스 승강장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버스 승강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버스 승강장(버스 표지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치) 버스 승강장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 내에

설치한다.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 ① 버스 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로 개설, 택지개발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설치 위치 및 규격, 관리이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버스 승강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버스 승강장의 디자인은 「군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5조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공공디자인을 고려한 제품을 설치한다.
2. 버스 승강장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으로 한다.
3. 버스 승강장 설치 대상지 주변 입지여건, 교통 환경 및 다른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노선 중 버스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가구가 3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
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주민 접근이 용이한 장소
3. 장래 택지개발 및 도로 개설에 따른 노선변경이 있을 시 사업의 타당성에 따라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시장이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버스 승강장 설치의 제한) 버스 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 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
- 2. 기 설치된 버스 승강장과의 거리가 300미터 미만의 장소(다만, 공공기관, 학교, 주거 밀집 지역, 병원, 공동주택,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 승강장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관리부서에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 3.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
- 4. 버스 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
- 5. 그 밖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 승강장 보호) 도로 관리부서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때, 점용구간 내에 버스 승강장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 점용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버스 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준공 및 이관) 사업 시행자가 버스 승강장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점검을 마친 후 준공하여야 하며, 버스 승강장을 시에 이관할 때에 준공도면·관계서류 및 물품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 관리) ① 관리부서는 버스 승강장의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 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 승강장이 소재한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② 관리부서는 버스 승강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번호를 제작·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읍·면·동장이 매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버스 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2. 버스 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
3. 버스 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버스 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5. 버스 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버스 승강장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원상 복구) 버스 승강장이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리부서와 협의 완료 후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버스 승강장 설치(신설·이설) 신청서

설치 위치	군산시 읍·면·동 (도로명, 지번) (리 반)
수혜세대 및 인구	세대 명
설치 필요성	

※ 붙임 : 설치지점 약도 1부

위와 같이 버스 승강장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연락처 :

성명 : (인)

읍·면·동(사업부서) 버스 승강장 설치 검토의견

설치(신설·이설) 검토 의견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임차인)	
동의서 필요 여부 등	
우선순위 (2개 이상 신청할 경우)	

- 붙임 1. 위치도 1부.
 2. 현장사진 1부.
 3. 동의서 부 (필요한 경우)

검토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읍·면·동·사업부서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버스 승강장 설치 동의서

버스 승강장 설치 (신설·이설) 위치	군산시 읍·면·동 (도로명, 지번) (리 반)
-------------------------	-------------------------------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버스 승강장으로 인한 제반문제(토지의 사용, 영업지장, 소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동의자

주 소		전 화 번 호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소유 토지 현황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리 반)		
확 인 자	군산시 읍·면·동 리 번지 (리 반) 리 장 (인)		

군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버스 승강장 관리카드

【 읍면동 】

관 리 번 호		승강장명칭 (방향)	
주소 및 위치			
구 조	벽돌조	철골조	기타()
버 스 시 간 표 부 착	여·부, 양호. 불량		
탄소발열벤치설치여부	개, 양호. 불량		
태양광조명등설치여부	여·부, 양호. 불량		
바 람 막 이 설 치 여 부			
설 치 시 기			
관 리 자			
승강장 사진 (전 면)			
위 치 도	버스표지판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80호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로, “위원회 라”를 ““위원회”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건설교통국장”을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직공무원중”을 “당해직 공무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등”을 “주택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제1호 중 “법률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 가격”을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공시지가”로, “관”을 “대한 의견제시에 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 중 “법률”을 “법률”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7호 중 “제21조”를 각각 “법률 제21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제8호부터 각 호 외의 부분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 9.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 10.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 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지가관리

계장”을 “해당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때에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u> 규정에 의하여 <u>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u> 」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 “ <u>위원회</u> ” 라 ----- -----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부위원장은 <u>자치행정국장·건설교통국장</u> 이 된다.	② ----- ----- <u>해당 업무 담당</u> <u>국장</u> -----.
③ 위원회의 위원은 <u>당해직공무원</u>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 ----- <u>당해직 공무원</u> <u>원 중</u>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및 주택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2. ----- ----- <u>주택 등</u> ----- -----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u>	④ ----- 「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이하 “ <u>시행령</u> ” 이라 한다) ----- -----
<u>제3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법률 제25조제1항에 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u>	<u>제3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u>법률</u>” 이라 한다) 및 시행령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1. <u>법률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 가격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u>	1. <u>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 공시지가</u> ----- <u>대한 의견제시에 관</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5. <u>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5. <u>법률</u> ----- ----- -----
6. <u>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u>	6. <u>법률 제21조</u> ----- -----

현 행	개 정 안
	<u>위원장이 필요하다</u> 고 인정할 때에는 <u>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	제8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u>토지정보과장</u> 이 되고 서기는 <u>지가관리계장</u> 이 된다.	② ---- <u>해당 업무 담당 과장</u> ---- ---- <u>해당 업무 담당 계장</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u>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 ----- 때에는 「 <u>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 ----- --.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조례 제1781호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업지구”란”을 ““지적재조사지구”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6. 법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0조제1항제1호 중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내”를 “지적재조사지구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일필지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담당”을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호 중 “사업대행자”를 “사업수행자”로 한다.

제22조제6호 및 제8호 중 “사업지구”를 각각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운영 (KLIS 연계)”를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0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지적재조사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1.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 ----- ----- ----- ----- ----- -----.
2.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2. “지적재조사지구”란 ----- ----- ----- ----- ----- -----.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위원은 본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제5조(위원회 기능) ----- ----- ----.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의결에 한하여 참여한다.	
1. 시장이 수립한 실시계획	<삭 제>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과 우선순위 조정	<삭 제>
3.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 대상	3.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여부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21조의2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 ----- ----- ----- ----- -----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 건에 관하여 <u>지적재조사 사업 지구내</u> 의 분쟁 및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1. ----- ----- <u>지적재조사지구내</u>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u>사업지구</u> 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u>일필지조사</u>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	④ ----- <u>지적 재조사지구</u> ----- <u>토지현황조사</u> ----- -----

현 행	개 정 안
<p><u>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u> <u>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u> <u>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u> <u>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u> <u>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u> <u>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u></p>	
<p>④·⑤ (생략)</p>	<p>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p>
<p><u>제19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u> <u>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u> <u>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u> <u>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u> <u>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u> <u>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u> <u>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u> <u>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u> <u>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u> <u>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u> <u>야 한다.</u></p> <p>1. <u>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 관</u> <u>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u> <u>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u> <u>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u></p> <p>2. <u>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u> <u>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우</p> <p>3. <u>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u></p>	
<p>제21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제21조(기능) ----- -----.</p>
<p>1. · 2.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지적재조사 측량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p>	<p>3. ----- <u>사업수행자</u>----- ---</p>
<p>4. (생략)</p>	<p>4. (현행과 같음)</p>
<p>제22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p>제22조(사무분장) ----- -----.</p>
<p>1. ~ 5. (생략)</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u></p>	<p>6. <u>지적재조사지구</u> ----</p>
<p>7. (생략)</p>	<p>7. (현행과 같음)</p>
<p>8. <u>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u></p>	<p>8. <u>지적재조사지구</u> -----</p>
<p>9. ~ 11. (생략)</p>	<p>9. ~ 11. (현행과 같음)</p>
<p>12. <u>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운영 (KLIS 연계)</u></p>	<p>12. ----- <u>운영</u></p>
<p>13. ~ 19. (생략)</p>	<p>13. ~ 19. (현행과 같음)</p>
<p>20. <u>사업지구 소유권 조정금 운영 관리</u></p>	<p>20. <u>지적재조사지구</u> ----- ----</p>
<p>21. ~ 23. (생략)</p>	<p>21. ~ 23. (현행과 같음)</p>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규칙 제713호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군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규칙 제714호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시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중 “근로”를 “노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제1조)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 ② (생 략)</p> <p>③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에게 추천 으러 할 수 있다.</p> <p>1. ~ 4. (생 략)</p> <p>5. 군산시에 소재한 학술 · 문화 · 종교 · 기술진흥 또는 <u>근로</u>관계 단체의 대표</p> <p>6. (생 략)</p> <p>④ · ⑤ (생 략)</p>	<p>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노동-----</p> <p>6.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규칙 제715호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중 “**의한여**”를 “**의하여**”로 한다.

제6조 중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7조 중 “**서식 에 의하고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를 “**서식에 의하고 물품검사**”로 한다.

제19조를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19조) 중 “**제33조**”를 “**제30조**”로 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
 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 서식
 에 의한다.

----- 서식에 의하고 물품
검사-----
 -----.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
3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물품재고조사 등) -- 제30
조-----

 -----.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규칙 제716호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연장)허”를 “(신규, 연장, 임시)허”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처리기간	
시장사용(신규·연장·임시) 허가 신청서		7일	
시장구분	□ 상설시장		
사용자 (대표자)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칭	시장	종류	(점포, 장육, 카타)
상호 및 호수	제 호	허가면적	m ²
사용기간 (영업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 시부터 : 시까지)		
사용료	원	예치금	원
<p>「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신규)허가, 연장 허가, 임시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p> <p>군 산 시 장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5. 정관 1부(단체에 한함) 		<p style="text-align: center;">없 음</p> <p style="text-align: right;">수수료</p> <p style="text-align: right;">없 음</p>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2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p>			

[별지 제2호서식]

허가 제 호 <h2 style="margin: 0;">시 장 사 용 허 가 증</h2>			
허가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사용허가 <input type="checkbox"/> 연장허가 <input type="checkbox"/> 임시사용허가		
성명 (법인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시장 명칭	시장	종 류	(점포, 장육, 기타)
상호 및 호수	제 호	면 적	m ²
사용 허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p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 사용을 허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군 산 시 장 (인)</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용허가 등 신청)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칭한다) 제5조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점포사용(연 장)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하고 사용 허가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발급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신청) ----- ----- ----- -----(신규, 연장, 임시) 허----- ----- -----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규칙 제717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제향만국장”을 “투자유치 업무담당 국장”으로, “산업혁신과장”을 “투자유치 업무담당 과장”으로, “산업혁신과 투자유치담당”을 “투자유치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조례 제18조제4항에서 규정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별지“제16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창업기업 지원) 조례 제18조의5 규정에 의해 투자금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별지“제16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p> <p>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u>경제항만국장</u>이 되고, 기금분임운용관은 <u>산업혁신과장</u>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u>산업혁신과 투자유치담당</u>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기금의 회계관계 공무원)</p> <p>① ----- ----- ----- 투자유치 <u>업무담당 국장</u>----- 투자 <u>유치 업무담당 과장</u>----- ----- <u>투자유치 업</u> <u>무담당 계장</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p> <p>① ~ ⑤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제9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조례 제18조제4항에서 규정</u> <u>한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u> <u>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u> <u>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u> <u>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보</u> <u>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u> <u>여야 한다.</u></p> <p>제9조의5(창업기업 지원) <u>조례 제</u> <u>18조의5</u> 규정에 의해 투자금액 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 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1</p>

6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신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규칙 제718호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

군산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규칙 제719호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을 “**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을 “**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10
0퍼센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의한다**”를 “**각호에 의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지된**”을 “**실효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를 “**폐천부지(처분)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구제수단의 고지**)”를 “(**이의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구제조항**”을 “**이의신청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점용료 등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입고지서를 통**

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중 “군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를 “군산시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소하천점용료등부과 · 징수조례시행규칙</u></p> <p>제2조(점용료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 2 제8호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정하는 감면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생 략) <u>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u> <u>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준용한다.</u> <p>제3조(토석 · 모래 · 자갈등의 채취 점용료 분납) ①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 · 모래 · 자갈 등의 채취 점용료의 분납은 다음 <u>각호의 1에 의한</u> 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2. (생 략) (생 략) 	<p><u>군산시 소하천 점용료 등 부과 · 징수 조례 시행규칙</u></p> <p>제2조(점용료의 감면)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과 같음) <u>소하천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u> --- ----- <u>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 100퍼센트</u> <p>제3조(토석 · 모래 · 자갈등의 채취 점용료 분납) ①----- ----- ----- <u>각호</u>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 2.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5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준용)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군산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이의신청 등) ① -----

----- 지방자치법 제140조----- 이의신청
내용-----.

②점용료 등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입고지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7조(준용) -----

----- 군산시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11일

군산시 규칙 제720호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중 “누수량에 대해서는”을 “누수량에 대해서는 50% 감면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모범업소 및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를 말하며, 이 경우”를 “모범 및 맛집 업소와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입점 업소에 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생 략)</p> <p>2. 조례 제34조제1항제2호 누수 요금의 적용</p> <p>가.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지하, 벽체 내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u>누수량에 대해서는</u> 해당 업종의 최초요금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수용가가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자동개폐장치고장, 욕조, 변기, 보일러, 수도꼭지 등 누수부분은 제외한다. 단, 감면 적용 기간은 직전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나. (생 략)</p> <p>3. · 4. (생 략)</p> <p>5. 조례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p>	<p>제37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p> <p>가. ----- ----- ----- ----- ----- -----<u>누수량</u> <u>에 대해서는 50% 감면하여</u> ----- ----- ----- ----- ----- -----.</p> <p>나. (현행과 같음)</p> <p>3. · 4. (현행과 같음)</p> <p>5. ----- -----</p>

현 행	개 정 안
<p>경우”란 다음과 같다.</p> <p>가. 좋은 식단체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 시장이 지정하는 <u>모범업소 및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u>를 말하며, 이 경우 상수도사용료의 30%를 감면 지원한다. 단, 감면대상 업소 중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나.·다. (생략)</p> <p>6. (생략)</p> <p>② (생략)</p>	<p>-----.</p> <p>가. ----- ----- ----<u>모범 및 맛집 업소와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입점 업소에 대하여</u> ----- ----- -----.</p> <p>나.·다.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고시 제2020 - 15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1. 10.

군 산 시 장

- 1. 사 업 명 : 군산 디오션시티 A5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 가. 명 칭 : 코리아신타(주)
 - 나. 대 표 자 : 백인균
 - 다.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대치동)
- 3. 사업내용
 - 가. 사업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28번지 외 3필지
 - 나. 주택구분 : 민영주택
 - 다. 대지면적 : 36,851㎡
 - 라. 건축면적 : 6,335.7796㎡(건폐율 : 17.19%)
 - 마. 연 면 적 : 128,117.3529㎡ (용적율 : 249.57%)
 - 바. 건축규모 : 지하 2층, 지상 29층 /아파트 6개동 외, 771세대
 - 사. 주택공급 계획

형별	주택구분	세대수	전용면적(m ²)	공용면적(m ²)	공급면적(m ²)	비고
계		771				
84A	민영주택	442	84.9918	24.6431	109.6349	
84B	민영주택	111	84.9933	24.6663	109.6596	
84C	민영주택	36	84.9719	24.7375	109.7094	
106	민영주택	125	106.9571	28.3940	135.3511	
124	민영주택	54	124.9311	33.0890	158.0201	
143	민영주택	1	143.0800	41.2831	184.3631	
154	민영주택	2	154.9864	42.5316	197.5180	

아. 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자. 사업비 : 244,041,265천원

차. 사업기간 : 2020년 12월 15일 ~ 2023년 6월 14일

4. 주요변경사항

가. 사업주체 변경

- 당초 : (주)디오션시티쓰리 대표 권육상
- 변경 : 코리아신탭(주) 대표 백인균

나. 사업기간 변경

- 당초 : 2021년 1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변경 : 2020년 12월 15일 ~ 2023년 6월 14일

5. 설계도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설계도서와 같음

6.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0.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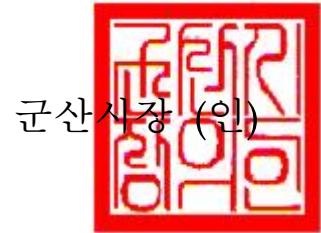
7. 기타 자세한 사항의 관계도면 및 서류는 군산시청(주택행정과 ☎063-454-3712)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고시 제2020-154호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1. 11.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성명(법인명)	군산시장(하수과장)		
하천명칭	경포천	하천등급	지방 2급 하천
점용장소 점용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군산시 미장동 57-47 외 2필지 ○ 공단대로 확장공사 구간 오수 펌프장 신설공사 		
점용면적	영구점용 36㎡		
최초허가일	2020년 11월 11일		
점용기간	영구점용 : 2020년 11월 11일 ~ 영구		

군산시 고시 제2020-155호

고군산2지구, 장전해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고군산2지구, 장전해이 지구의 경계가 확정되었기에 「같은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1.

군 산 시 장

1. 공고기간 : 2020. 11. 11. ~ 2020. 11. 24. (14일간)
2. 사업명 : 2019년 고군산2지구, 장전해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3.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4. 사업기간 : 2019. 2. 22. ~ 2020. 11. 10.
5. 사업위치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207번지 일원
6. 지적확정 조서 : 『붙임 참조』
7. 관계서류의 열람
 - 가. 관계서류 :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경계점표지등록부,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등
 - 나. 열람기간 : 2020. 11. 11. ~ 2020. 11. 24. (14일간)
 - 다. 열람장소 :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063-454-4332)

붙임 지적확정조서 1부. 끝.

지적확정조서

No.	토지소재지		종전토지				확정된토지						소유자 성명	비고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지목	면적 (㎡)	본번	부번	지목	면적 (㎡)	증가 한 면적 (㎡)	감소한 면적 (㎡)		
1		산북동	1048	3	전	66	1048	3	전	47.5	0	-18.5	강*희	
2		산북동	1048	16	답	69	1048	16	답	156.6	87.6	0	국(**재정 부)	
3		산북동	1048	17	답	96	1048	17	답	54.7	0	-41.3	국(**재정 부)	
4		산북동	1048	18	전	267	1048	18	전	271.9	4.9	0	신*숙	
5		산북동	1048	19	답	175	1048	19	답	175	0	0	신*희	
6		산북동	1048	20	답	132	1048	20	답	72.8	0	-59.2	국(**재정 부)	
7		산북동	1048	21	답	99	1048	21	답	73.3	0	-25.7	국(**재정 부)	
8							1048	27	답	99.1	99.1	0	국(**재정 부)	
9		산북동	1048	22	답	36	1048	22	답	89.9	53.9	0	국(**재정 부)	
10		산북동	1048	25	대	688	1048	25	대	688	0	0	한국**주 택공사	
11		산북동	1049	1	대	23	1049	1	대	23	0	0	박*순	
12		산북동	1049	2	대	13	1049	2	대	13	0	0	강*현	
13		산북동	1049	3	대	23	1049	3	대	23	0	0	강*현	
14		산북동	1539		대	1008	1539		대	1133.1	125.1	0	전*철	
15		산북동	1541		대	262	1541		대	353.8	91.8	0	신*순	
16		산북동	1541	1	대	2	1541	1	대	2	0	0	신*순	
17		산북동	1542	1	대	69	1542	1	대	69	0	0	박*자	
18		산북동	1542	2	대	218	1542	2	대	250.5	32.5	0	박*자	
19		산북동	1542	3	대	76	1542	3	대	66.6	0	-9.4	군*시	
20		산북동	1542	4	대	370	1542	4	대	266.9	0	-103.1	군*시	
21		산북동	1542	5	대	350	1542	5	대	322.3	0	-27.7	군*시	
22							1542	6	대	25.7	25.7	0	군*시	
23		산북동	1543	2	대	40	1543	2	대	19	0	-21	국(**재정 부)	
24		산북동	1543	3	대	7	1543	3	대	7	0	0	국(**재정 부)	
25		산북동	1544	3	대	188	1544	3	대	188	0	0	전*심	
26		산북동	1545	1	전	215	1545	1	전	223.6	8.6	0	군*시	
27							1545	5	전	21.3	21.3	0	군*시	
28		산북동	1545	2	대	495	1545	2	대	522.8	27.8	0	신*철	
29		산북동	1545	3	대	175	1545	3	대	195.8	20.8	0	군*시	
30		산북동	1545	4	대	222	1545	4	대	158.1	0	-63.9	신*철	

31	산북동	1546	1	대	417	1546	1	대	450.9	33.9	0	홍*천
32	산북동	1546	2	대	272	1546	2	대	336.5	64.5	0	차*준
33	산북동	1546	3	대	189	1546	3	대	208.7	19.7	0	홍*천
34	산북동	1546	5	대	195	1546	5	대	165.1	0	-29.9	차*준
35	산북동	1547	1	대	185	1547	1	대	185	0	0	권*배
36	산북동	1547	2	대	132	1547	2	대	132	0	0	권*배
37	산북동	1547	3	대	304	1547	3	대	304	0	0	권*배
38	산북동	1547	4	대	136	1547	4	대	136	0	0	권*배
39	산북동	1547	5	대	311	1547	5	대	340.9	29.9	0	권*배
40	산북동	1548	1	대	251	1548	1	대	251	0	0	권*배
41	산북동	1548	3	대	678	1548	3	대	726.6	48.6	0	신*량
42	산북동	1548	4	대	129	1548	4	대	135.6	6.6	0	권*배
43	산북동	1625	1	답	201	1625	1	답	220.3	19.3	0	강*희
44	산북동	1626		대	1068	1626		대	1068	0	0	정*승외1인
45	산북동	1627		대	620	1627		대	521.8	0	-98.2	대***장 로회외향교회
46	산북동	1627	1	대	653	1627	1	대	606.9	0	-46.1	장***노인회관
47	산북동	1628	1	대	598	1628	1	대	529.9	0	-68.1	군*시
48						1628	4	대	57.6	57.6	0	군*시
49	산북동	1628	2	대	446	1628	2	대	458.9	12.9	0	군*시
50						1628	5	대	18.1	18.1	0	군*시
51	산북동	1628	3	대	248	1628	3	대	218.3	0	-29.7	군*시
52						1628	6	대	29.6	29.6	0	군*시
53	산북동	1629		대	812	1629		대	812	0	0	한국**주 택공사
54	산북동	1629	1	대	497	1629	1	대	415.3	0	-81.7	군*시
55	산북동	1630	1	대	102	1630	1	대	134.7	32.7	0	문*욱
56	산북동	1630	2	대	106	1630	2	대	106	0	0	안*일
57	산북동	1630	3	대	155	1630	3	대	155	0	0	안*일
58	산북동	1630	4	대	261	1630	4	대	261	0	0	안*영
59	산북동	1630	5	대	36	1630	5	대	36	0	0	강*희
60	산북동	1630	6	대	142	1630	6	대	153.9	11.9	0	강*희
61	산북동	1630	7	대	410	1630	7	대	410	0	0	강*희
62	산북동	1631	1	대	241	1631	1	대	270.7	29.7	0	강*순
63	산북동	1631	2	대	860	1631	2	대	833.2	0	-26.8	한*욱
64	산북동	1631	3	대	172	1631	3	대	172	0	0	강*순
65	산북동	1631	4	대	53	1631	4	대	53	0	0	박*완
66	산북동	1632	1	대	188	1632	1	대	188	0	0	박*완
67	산북동	1632	2	대	545	1632	2	대	545	0	0	신*석
68	산북동	1632	3	대	1071	1632	3	대	987.4	0	-83.6	나*태
69	산북동	1633	1	대	559	1633	1	대	613.9	54.9	0	군*시
70	산북동	1633	2	대	559	1633	2	대	554	0	-5	군*시
71	산북동	1633	3	대	860	1633	3	대	860	0	0	마*임
72	산북동	1634	1	대	301	1634	1	대	347.8	46.8	0	강*석
73	산북동	1634	2	대	662	1634	2	대	687.8	25.8	0	김*순
74	산북동	1634	3	대	119	1634	3	대	72.2	0	-46.8	강*석
75	산북동	1634	4	대	9	1634	4	대	9	0	0	김*순
76	산북동	1635	1	대	344	1635	1	대	344	0	0	홍*식
77	산북동	1635	2	대	228	1635	2	대	228	0	0	이*숙

78	산북동	1635	3	대	572	1635	3	대	572	0	0	이*숙
79	산북동	1635	4	대	50	1635	4	대	50	0	0	이*숙
80	산북동	1636		대	162	1636		대	162	0	0	홍*천
81	산북동	1637	1	대	251	1637	1	대	251	0	0	라*림외1인
82	산북동	1637	2	대	215	1637	2	대	223.6	8.6	0	최*자
83	산북동	1637	3	대	185	1637	3	대	185	0	0	최*자
84	산북동	1637	4	대	212	1637	4	대	224.7	12.7	0	유*복
85	산북동	1637	6	대	116	1637	6	대	108.3	0	-7.7	최*자
86	산북동	1637	7	대	109	1637	7	대	103.6	0	-5.4	최*자
87	산북동	1638		대	585	1638		대	549	0	-36	홍*주
88	산북동	1638	1	대	493	1638	1	대	501.8	8.8	0	조*락
89	산북동	1639	1	대	119	1639	1	대	119	0	0	박*렬외1인
90	산북동	1639	2	대	340	1639	2	대	340	0	0	김*계외1인
91	산북동	1639	3	대	334	1639	3	대	334	0	0	박*렬
92	산북동	1639	4	대	238	1639	4	대	273.7	35.7	0	김*규외2인
93	산북동	1640	1	대	205	1640	1	대	208.5	3.5	0	안*자
94	산북동	1640	2	대	155	1640	2	대	153.3	0	-1.7	신*열
95	산북동	1640	3	대	390	1640	3	대	390	0	0	백*례외1인
96	산북동	1640	4	대	321	1640	4	대	321	0	0	유*호
97	산북동	1641	1	대	350	1641	1	대	350	0	0	김*출
98	산북동	1641	2	대	496	1641	2	대	481.9	0	-14.1	군*시
99						1641	4	대	13.3	13.3	0	군*시
100	산북동	1641	3	대	255	1641	3	대	227.8	0	-27.2	군*시
101						1641	5	대	47.9	47.9	0	군*시
102	산북동	1642	1	대	598	1642	1	대	608.6	10.6	0	강*희
103	산북동	1642	2	대	307	1642	2	대	307	0	0	대****장 로회외향교회
104	산북동	1643	1	종교 용지	340	1643	1	종교 용지	340	0	0	대****장 로회외향교회
105	산북동	1643	2	종교 용지	56	1643	2	종교 용지	56	0	0	대****장 로회외향교회
106	산북동	1644	1	대	370	1644	1	대	370	0	0	김*심
107	산북동	1644	2	대	598	1644	2	대	598	0	0	강*호
108	산북동	1644	3	대	169	1644	3	대	204.7	35.7	0	배*석
109	산북동	1645		잡종 지	88	1645		잡종 지	88	0	0	대****장 로회외향교회
110	산북동	1645	1	전	104	1645	1	전	81.4	0	-22.6	안*일외1인
111	산북동	1646		잡종 지	505	1646		잡종 지	505	0	0	대****장 로회외향교회
112	산북동	1646	1	답	83	1646	1	답	83	0	0	양*용
113	산북동	1647		주차 장	671	1647		주차 장	602.6	0	-68.4	대****장 로회외향교회
114	산북동	1648	1	전	60	1648	1	전	60	0	0	신*숙

115		산북동	1648	2	전	79	1648	2	전	83.3	4.3	0	배*석	
116		산북동	1649	2	대	1038	1649	2	대	1038	0	0	신*숙	
117		산북동	1650	1	대	301	1650	1	대	324	23	0	신*희	
118		산북동	1650	2	대	678	1650	2	대	678	0	0	신*희	
119		산북동	1651	1	대	278	1651	1	대	301	23	0	이*복	
120		산북동	1651	2	대	397	1651	2	대	432.1	35.1	0	김*인	
121		산북동	1651	3	대	380	1651	3	대	351.5	0	-28.5	양*용	
122		산북동	1652	1	전	129	1652	1	전	129	0	0	곽*경	
123		산북동	1652	2	전	132	1652	2	전	132	0	0	곽*경	
124		산북동	1653	1	대	102	1653	1	대	118.9	16.9	0	홍*일	
125		산북동	1653	2	전	132	1653	2	전	132	0	0	홍*관	
126		산북동	1654	1	대	377	1654	1	대	465	88	0	강*모	
127		산북동	1654	2	대	493	1654	2	대	469.9	0	-23.1	최*자	
128		산북동	1655	1	대	109	1655	1	대	109	0	0	박*순	
129		산북동	1655	2	대	155	1655	2	대	178	23	0	임*혜	
130		산북동	1655	3	대	159	1655	3	대	159	0	0	박*순	
131		산북동	1655	4	대	278	1655	4	대	278	0	0	강*현	
132		산북동	1655	5	대	446	1655	5	대	446	0	0	제*안	
133		산북동	1655	6	대	357	1655	6	대	285.4	0	-71.6	유*복	
134		산북동	1656	2	전	73	1656	2	전	31	0	-42	곽*경	
135		산북동	1656	3	전	66	1656	3	전	142	76	0	곽*경	
136		산북동	1657	3	전	142	1657	3	전	142	0	0	최*길외1인	
137		산북동	1658		전	1792	1658		전	1880.8	88.8	0	군*시	
138		산북동	1659	1	대	63	1659	1	대	63	0	0	박*순	
139		산북동	1659	2	대	311	1659	2	대	357.9	46.9	0	임*혜	
140		산북동	1659	3	대	162	1659	3	대	162	0	0	임*혜	
141		산북동	3475	1	도로	804	3475	1	도로	901.7	97.7	0	국(**산부)	
142							3475	5	도로	75.8	75.8	0	국(**산부)	
143		산북동	3476		구거	2328	3476		구거	1749.3	0	-578.7	국(**산부)	
144		산북동	3477		도로	2532	3477		도로	2823.6	291.6	0	국(**산부)	
145		산북동	3483		구거	1283	3483		구거	735.4	0	-547.6	국(**산부)	
146	옥도면	선유도리	13		대	493	13		대	493.7	0.7	0	정*주	
147	옥도면	선유도리	14		대	136	14		대	136	0	0	양*녀	
148	옥도면	선유도리	18		대	615	18		대	623.8	8.8	0	임*일	
149	옥도면	선유도리	19		대	436	19		대	498.1	62.1	0	임*준	
150	옥도면	선유도리	20		대	152	20		대	150	0	-2	임*준외1인	
151							20	1	대	18.9	18.9	0	임*준외1인	
152	옥도면	선유도리	21		대	126	21		대	151	25	0	조*례	
153	옥도면	선유도리	22		대	169	22		대	178.4	9.4	0	김*종외1인	
154	옥도면	선유도리	23		대	506	23		대	506	0	0	박*양	
155	옥도면	선유도리	24		전	565	24		전	497.3	0	-67.7	박*선외3인	
156	옥도면	선유도리	25		대	500	25		대	500	0	0	김*자	
157	옥도면	선유도리	25	1	대	194	25	1	대	311.9	117.9	0	김*봉	

158	옥도면	선유도리	33		전	307	33		전	307	0	0	소*일
159	옥도면	선유도리	33	1	대	345	33	1	대	393.1	48.1	0	양*석
160	옥도면	선유도리	33	2	전	171	33	2	전	171	0	0	양*석
161	옥도면	선유도리	34		대	387	34		대	387	0	0	홍*기외2인
162	옥도면	선유도리	39		전	1038	39		전	1038	0	0	김*원
163	옥도면	선유도리	40		전	1275	40		전	1275	0	0	소*숙외1인
164	옥도면	선유도리	40	1	전	612	40	1	전	612	0	0	이*자
165	옥도면	선유도리	40	2	전	662	40	2	전	662	0	0	송*진
166	옥도면	선유도리	41		전	1217	41		전	1217	0	0	강*화
167	옥도면	선유도리	42		답	1442	42		답	1442	0	0	황*영
168	옥도면	선유도리	42	1	답	1653	42	1	답	1653	0	0	조*선
169	옥도면	선유도리	42	2	답	827	42	2	답	827	0	0	윤*순
170	옥도면	선유도리	42	3	답	826	42	3	답	826	0	0	염*희
171	옥도면	선유도리	42	4	답	1322	42	4	답	1322	0	0	노*례
172	옥도면	선유도리	42	5	답	827	42	5	답	827	0	0	김*례
173	옥도면	선유도리	42	6	답	495	42	6	답	495	0	0	김*수외2인
174	옥도면	선유도리	45		전	1055	45		전	1055	0	0	서*아
175	옥도면	선유도리	46		전	1779	46		전	1779	0	0	임*일
176	옥도면	선유도리	47		잡종지	496	47		잡종지	348.3	0	-147.7	에*케이텔레콤주식회사
177	옥도면	선유도리	47	1	전	299	47	1	전	299	0	0	김*정
178	옥도면	선유도리	47	2	전	141	47	2	전	141	0	0	김*현
179	옥도면	선유도리	48		전	724	48		전	724	0	0	송*윤
180	옥도면	선유도리	49		대	212	49		대	227.8	15.8	0	송*경
181	옥도면	선유도리	49	1	대	66	49	1	대	66	0	0	조*례
182	옥도면	선유도리	50		대	145	50		대	160.1	15.1	0	박*표
183	옥도면	선유도리	54		전	764	54		전	764	0	0	군*시
184	옥도면	선유도리	55		전	1266	55		전	1266	0	0	홍*기외2인
185	옥도면	선유도리	56		전	661	56		전	661	0	0	군*시
186	옥도면	선유도리	56	1	전	96	56	1	전	96	0	0	김*호
187	옥도면	선유도리	57		전	843	57		전	843	0	0	군*시
188	옥도면	선유도리	58		전	493	58		전	493	0	0	김*호
189	옥도면	선유도리	59		전	575	59		전	575	0	0	김*희
190	옥도면	선유도리	62		전	1779	62		전	1779	0	0	권*석외1인
191	옥도면	선유도리	63		전	605	63		전	605	0	0	고*녀
192	옥도면	선유도리	64		전	1500	64		전	1500	0	0	박*자
193	옥도면	선유도리	64	1	전	239	64	1	전	239	0	0	권*명
194	옥도면	선유도리	65		대	465	65		대	465	0	0	고*곤
195	옥도면	선유도리	65	1	도로	51	65	1	도로	65.8	14.8	0	고*곤
196	옥도면	선유도리	66		전	1858	66		전	1858	0	0	권*석외1인
197	옥도면	선유도리	67		전	426	67		전	426	0	0	국*호외1인
198	옥도면	선유도리	68		대	314	68		대	314	0	0	박*녀
199	옥도면	선유도리	69		대	238	69		대	273	35	0	송*란
200	옥도면	선유도리	70		전	291	70		전	291	0	0	임*택
201	옥도면	선유도리	70	1	잡종지	224	70	1	잡종지	197.4	0	-26.6	국(**재정부)

202	옥도면	선유도리	70	2	잡종지	52	70	2	잡종지	52	0	0	국(**재정부)
203	옥도면	선유도리	70	3	잡종지	176	70	3	잡종지	195.9	19.9	0	임*택
204	옥도면	선유도리	70	4	잡종지	491	70	4	잡종지	453.8	0	-37.2	국(**재정부)
205	옥도면	선유도리	70	5	잡종지	146	70	5	잡종지	146	0	0	국(**재정부)
206	옥도면	선유도리	70	6	잡종지	245	70	6	잡종지	217.7	0	-27.3	국(**재정부)
207	옥도면	선유도리	70	7	잡종지	146	70	7	잡종지	88.8	0	-57.2	국(**재정부)
208	옥도면	선유도리	71		창고용지	562	71		창고용지	613.9	51.9	0	송*희
209	옥도면	선유도리	71	1	창고용지	331	71	1	창고용지	431.9	100.9	0	황*희
210	옥도면	선유도리	72		전	124	72		전	124	0	0	군*시
211	옥도면	선유도리	72	1	전	331	72	1	전	331	0	0	임*택
212	옥도면	선유도리	72	2	전	21	72	2	전	21	0	0	군*시
213	옥도면	선유도리	73		전	1160	73		전	1160	0	0	군*시
214	옥도면	선유도리	74		잡종지	398	74		잡종지	398	0	0	이*복
215	옥도면	선유도리	74	1	잡종지	366	74	1	잡종지	388.9	22.9	0	이*숙
216	옥도면	선유도리	75		잡종지	380	75		잡종지	361.9	0	-18.1	임*자
217	옥도면	선유도리	75	1	대	331	75	1	대	331	0	0	이*용
218	옥도면	선유도리	75	2	전	162	75	2	전	204.2	42.2	0	조*환
219	옥도면	선유도리	76		전	595	76		전	595	0	0	군*시
220	옥도면	선유도리	77		전	549	77		전	549	0	0	군*시
221	옥도면	선유도리	78		전	731	78		전	731	0	0	임*희외1인
222	옥도면	선유도리	79		전	569	79		전	569	0	0	조*삼
223	옥도면	선유도리	80		전	3663	80		전	3663	0	0	정*현
224	옥도면	선유도리	80	1	전	236	80	1	전	236	0	0	정*현
225	옥도면	선유도리	88		전	501	88		전	501	0	0	조*선
226	옥도면	선유도리	88	1	전	163	88	1	전	163	0	0	조*선
227	옥도면	선유도리	89		전	595	89		전	595	0	0	조*선
228	옥도면	선유도리	89	1	전	139	89	1	전	139	0	0	조*선
229	옥도면	선유도리	90		대	168	90		대	188.5	20.5	0	임*군
230	옥도면	선유도리	90	1	대	545	90	1	대	587.9	42.9	0	임*군
231	옥도면	선유도리	90	2	도로	18	90	2	도로	18	0	0	임*군
232	옥도면	선유도리	90	3	대	83	90	3	대	94.6	11.6	0	임*군
233	옥도면	선유도리	90	4	대	4	90	4	대	11.7	7.7	0	군*시
234	옥도면	선유도리	90	5	대	114	90	5	대	111.2	0	-2.8	군*시
235	옥도면	선유도리	90	6	대	23	90	6	대	21.8	0	-1.2	군*시
236	옥도면	선유도리	91		전	57	91		전	57	0	0	송*섭
237	옥도면	선유도리	91	1	전	25	91	1	전	25	0	0	송*섭
238	옥도면	선유도리	91	2	전	116	91	2	전	116	0	0	송*섭
239	옥도면	선유도리	92	1	대	212	92	1	대	274.4	62.4	0	김*원
240	옥도면	선유도리	94	3	답	1653	94	3	답	1653	0	0	임*하
241	옥도면	선유도리	94	4	답	496	94	4	답	519.8	23.8	0	임*택
242	옥도면	선유도리	94	15	답	2380	94	15	답	2399.9	19.9	0	임*호
243	옥도면	선유도리	94	16	답	953	94	16	답	953	0	0	박*순
244	옥도면	선유도리	94	19	답	168	94	19	답	168	0	0	인*진

245	옥도면	선유도리	94	20	답	866	94	20	답	866	0	0	인*진
246	옥도면	선유도리	94	26	답	116	94	26	답	116	0	0	고*규
247	옥도면	선유도리	94	28	답	286	94	28	답	286	0	0	허*자
248	옥도면	선유도리	94	29	답	75	94	29	답	40.2	0	-34.8	김*원
249	옥도면	선유도리	94	52	답	20	94	52	답	20	0	0	김*원
250	옥도면	선유도리	94	53	답	1005	94	53	답	1005	0	0	박*선
251	옥도면	선유도리	94	66	답	84	94	66	답	84	0	0	허*자
252	옥도면	선유도리	94	67	답	324	94	67	답	324	0	0	허*자
253	옥도면	선유도리	95		대	264	95		대	315.2	51.2	0	나*병
254	옥도면	선유도리	95	2	전	174	95	2	전	227.9	53.9	0	임*훈
255	옥도면	선유도리	95	3	전	298	95	3	전	324.6	26.6	0	홍*희
256	옥도면	선유도리	95	4	전	198	95	4	전	212.5	14.5	0	홍*희
257	옥도면	선유도리	96	1	대	104	96	1	대	245.9	141.9	0	노*국
258	옥도면	선유도리	97		전	113	97		전	113	0	0	김*술
259	옥도면	선유도리	97	1	대	237	97	1	대	227.5	0	-9.5	고*규
260	옥도면	선유도리	97	2	전	152	97	2	전	230.8	78.8	0	박*덕
261	옥도면	선유도리	97	3	대	301	97	3	대	397.1	96.1	0	김*원
262	옥도면	선유도리	97	4	전	51	97	4	전	153	102	0	김*수
263	옥도면	선유도리	98		전	820	98		전	820	0	0	임*준
264	옥도면	선유도리	98	1	대	229	98	1	대	229	0	0	추*자
265	옥도면	선유도리	98	2	대	247	98	2	대	247	0	0	임*준
266	옥도면	선유도리	100		대	350	100		대	350	0	0	조*호
267	옥도면	선유도리	101		대	116	101		대	116	0	0	김*술
268	옥도면	선유도리	102		전	169	102		전	113.9	0	-55.1	박*환
269	옥도면	선유도리	103		대	258	103		대	258	0	0	임*선
270	옥도면	선유도리	104		대	268	104		대	269.5	1.5	0	송*희
271	옥도면	선유도리	105		대	457	105		대	457	0	0	이*리
272	옥도면	선유도리	105	1	대	169	105	1	대	187.9	18.9	0	임*준
273	옥도면	선유도리	105	2	대	29	105	2	대	29	0	0	이*관외3 인
274	옥도면	선유도리	106		대	235	106		대	235	0	0	문*준
275	옥도면	선유도리	107		전	69	107		전	69	0	0	고*삼
276	옥도면	선유도리	108		대	169	108		대	195.3	26.3	0	김*순
277	옥도면	선유도리	109		대	126	109		대	196.9	70.9	0	이*녀
278	옥도면	선유도리	110		대	288	110		대	168.1	0	-119.9	조*영
279	옥도면	선유도리	111		전	380	111		전	277.6	0	-102.4	이*성외1 인
280	옥도면	선유도리	111	2	대	412	111	2	대	491.1	79.1	0	최*선외1 인
281	옥도면	선유도리	111	3	전	212	111	3	전	162.1	0	-49.9	임*옥
282	옥도면	선유도리	111	4	대	196	111	4	대	210.3	14.3	0	송*순
283	옥도면	선유도리	111	6	대	27	111	6	대	40.3	13.3	0	임*옥
284	옥도면	선유도리	111	7	대	373	111	7	대	319.6	0	-53.4	임*옥
285	옥도면	선유도리	111	8	대	225	111	8	대	238.3	13.3	0	임*옥
286	옥도면	선유도리	111	9	임야	45	111	9	임야	39.8	0	-5.2	임*옥
287	옥도면	선유도리	111	10	대	25	111	10	대	25	0	0	임*옥
288	옥도면	선유도리	111	11	임야	542	111	11	임야	484.5	0	-57.5	한*규
289	옥도면	선유도리	111	12	전	203	111	12	전	203	0	0	한*규
290	옥도면	선유도리	112		답	4095	112		답	4095	0	0	임*영외3 인
291	옥도면	선유도리	112	2	전	1167	112	2	전	1167	0	0	손*열외1 인

292	옥도면	선유도리	112	3	전	261	112	3	전	261	0	0	박*자외5인
293	옥도면	선유도리	112	4	전	278	112	4	전	278	0	0	유*진
294	옥도면	선유도리	112	5	전	234	112	5	전	234	0	0	박*종
295	옥도면	선유도리	112	6	답	495	112	6	답	435.1	0	-59.9	박*규
296	옥도면	선유도리	112	7	답	816	112	7	답	786	0	-30	정*용외2인
297	옥도면	선유도리	112	8	답	1496	112	8	답	1411.2	0	-84.8	임*택외3인
298	옥도면	선유도리	112	9	답	496	112	9	답	542.5	46.5	0	설*영외3인
299	옥도면	선유도리	112	10	전	1168	112	10	전	1168	0	0	반*권외1인
300	옥도면	선유도리	113		대	930	113		대	930	0	0	문*석
301	옥도면	선유도리	113	1	대	290	113	1	대	342.4	52.4	0	문*석
302	옥도면	선유도리	114		답	1131	114		답	1131	0	0	박*환
303	옥도면	선유도리	126		전	417	126		전	417	0	0	송*섭
304	옥도면	선유도리	146		대	86	146		대	147.2	61.2	0	조*오
305	옥도면	선유도리	147		전	60	147		전	60	0	0	조*근
306	옥도면	선유도리	147	1	전	479	147	1	전	479	0	0	박*선외2인
307	옥도면	선유도리	148		전	212	148		전	212	0	0	박*선
308	옥도면	선유도리	148	1	도로	727	148	1	도로	919.6	192.6	0	국(*설부)
309							148	15	도로	39.7	39.7	0	국(*설부)
310							148	16	도로	41.4	41.4	0	국(*설부)
311							148	17	도로	54.9	54.9	0	국(*설부)
312							148	18	도로	33.4	33.4	0	국(*설부)
313							148	19	도로	11.7	11.7	0	국(*설부)
314	옥도면	선유도리	148	2	대	169	148	2	대	169	0	0	박*용외1인
315	옥도면	선유도리	148	3	대	157	148	3	대	186.2	29.2	0	권*조
316	옥도면	선유도리	148	4	대	48	148	4	대	48	0	0	조*오
317	옥도면	선유도리	148	5	대	65	148	5	대	65	0	0	조*오
318	옥도면	선유도리	148	7	대	66	148	7	대	66	0	0	이*만
319	옥도면	선유도리	148	8	임야	810	148	8	임야	810	0	0	이*만
320	옥도면	선유도리	148	9	대	1065	148	9	대	1065	0	0	이*만
321	옥도면	선유도리	148	10	대	497	148	10	대	497	0	0	이*만
322	옥도면	선유도리	148	11	임야	266	148	11	임야	266	0	0	이*만
323	옥도면	선유도리	148	12	임야	96	148	12	임야	111.6	15.6	0	이*만
324	옥도면	선유도리	148	13	임야	580	148	13	임야	580	0	0	이*만
325	옥도면	선유도리	149		전	2228	149		전	2245.4	17.4	0	박*상외5인
326	옥도면	선유도리	149	1	대	658	149	1	대	658	0	0	양*순외4인
327	옥도면	선유도리	149	2	전	1815	149	2	전	1815	0	0	박*상
328	옥도면	선유도리	149	3	전	1157	149	3	전	1157	0	0	박*상
329	옥도면	선유도리	150		전	96	150		전	96	0	0	이*만
330	옥도면	선유도리	151		전	1336	151		전	1391.4	55.4	0	조*래외4인
331	옥도면	선유도리	151	4	대	165	151	4	대	165	0	0	조*래외4인
332	옥도면	선유도리	152		전	307	152		전	307	0	0	조*래외4인
333	옥도면	선유도리	153		대	450	153		대	450	0	0	유*애

334	옥도면	선유도리	154		대	387	154		대	387	0	0	이*철
335	옥도면	선유도리	155		대	198	155		대	212.5	14.5	0	김*옥
336	옥도면	선유도리	156		대	145	156		대	148.3	3.3	0	김*순
337	옥도면	선유도리	157		대	179	157		대	179	0	0	김*애
338	옥도면	선유도리	158		대	288	158		대	288	0	0	서*복
339	옥도면	선유도리	159		전	660	159		전	660	0	0	박*정
340	옥도면	선유도리	159	1	전	47	159	1	전	47	0	0	서*남
341	옥도면	선유도리	160		전	218	160		전	218	0	0	박*정
342	옥도면	선유도리	161		전	221	161		전	234.5	13.5	0	김*민
343	옥도면	선유도리	162		전	1015	162		전	1026.8	11.8	0	주*희
344	옥도면	선유도리	163		대	414	163		대	424.2	10.2	0	조*영외4인
345	옥도면	선유도리	163	1	도로	16	163	1	도로	16	0	0	조*영외4인
346	옥도면	선유도리	167		전	1000	167		전	1006.8	6.8	0	김*익
347	옥도면	선유도리	459		도로	3710	459		도로	3586.4	0	-123.6	국(*설부)
348							459	3	도로	11.9	11.9	0	국(*설부)
349							459	4	도로	216.7	216.7	0	국(*설부)
350							459	5	도로	717.8	717.8	0	국(*설부)
351							459	6	도로	42.5	42.5	0	국(*설부)
352							459	7	도로	59.8	59.8	0	국(*설부)
353	옥도면	선유도리	461		도로	300	461		도로	193.3	0	-106.7	국(*설부)
354	옥도면	선유도리	467		도로	585	467		도로	228.5	0	-356.5	국(*설부)
355	옥도면	선유도리	468		대	154	468		대	171.8	17.8	0	두*미외2인
356	옥도면	선유도리	469		잡종지	154	469		잡종지	154	0	0	임*영
357	옥도면	선유도리	470		대	101	470		대	197.5	96.5	0	임*기
358	옥도면	선유도리	472		대	99	472		대	99	0	0	이*순
359	옥도면	선유도리	473		잡종지	2857	473		잡종지	2640.4	0	-216.6	국(**재정부)
360	옥도면	선유도리	473	1	도로	688	473	1	도로	414.1	0	-273.9	국(**재정부)
361	옥도면	선유도리	473	2	도로	73	473	2	도로	42.8	0	-30.2	국
362	옥도면	선유도리	산8		임야	1587	149	6	임야	1587	0	0	박*상
363	옥도면	선유도리	산9	1	임야	298	149	5	임야	298	0	0	박*상
364	옥도면	선유도리	산9	3	임야	1091	149	4	임야	1181	90	0	조*래외4인
365	옥도면	선유도리	산13		묘지	4383	112	11	묘지	3212.9	0	-1170.1	군*시
366							112	12	묘지	363.8	363.8	0	군*시
367							112	13	묘지	292.8	292.8	0	군*시
368	옥도면	선유도리	산17	4	임야	198	111	14	임야	195.3	0	-2.7	김*화
369	옥도면	선유도리	산19		임야	397	111	13	임야	397	0	0	박*환외1인
370	옥도면	선유도리	산20		임야	275	107	1	임야	275	0	0	김*숙
371	옥도면	선유도리	산20	1	임야	559	107	2	임야	559	0	0	김*숙
372	옥도면	선유도리	산20	2	임야	951	107	3	임야	969	18	0	문*필
373	옥도면	선유도리	산26		임야	2975	14	1	임야	2975	0	0	김*래외4인
374	옥도면	무녀도리	124		잡종지	4959	124		잡종지	4959	0	0	복*순
375	옥도면	무녀도리	124	1	잡종지	1653	124	1	잡종지	1653	0	0	김*임외7인

376	옥도면	무녀도리	124	2	잡종지	2882	124	2	잡종지	2882	0	0	김*숙
377	옥도면	무녀도리	124	3	잡종지	1653	124	3	잡종지	1653	0	0	박*봉외1인
378	옥도면	무녀도리	124	4	잡종지	595	124	4	잡종지	595	0	0	김*임외7인
379	옥도면	무녀도리	124	5	잡종지	992	124	5	잡종지	992	0	0	김*임외7인
380	옥도면	무녀도리	124	6	잡종지	777	124	6	잡종지	777	0	0	김*임외7인
381	옥도면	무녀도리	124	7	잡종지	942	124	7	잡종지	942	0	0	김*임외7인
382	옥도면	무녀도리	126		전	774	126		전	774	0	0	조*례
383	옥도면	무녀도리	127		전	1071	127		전	1071	0	0	신*근
384	옥도면	무녀도리	127	1	잡종지	5343	127	1	잡종지	5156.2	0	-186.8	국(**재정부)
385	옥도면	무녀도리	128		전	407	128		전	407	0	0	김*님
386	옥도면	무녀도리	129		전	724	129		전	724	0	0	이*선
387	옥도면	무녀도리	130		대	660	130		대	654.1	0	-5.9	신*철
388	옥도면	무녀도리	130	1	전	272	130	1	전	272	0	0	신*철
389	옥도면	무녀도리	130	2	전	149	130	2	전	264.3	115.3	0	신*철
390	옥도면	무녀도리	131		전	192	131		전	192	0	0	이*용
391	옥도면	무녀도리	132		전	192	132		전	192	0	0	김*수
392	옥도면	무녀도리	133		전	205	133		전	205	0	0	정*식
393	옥도면	무녀도리	134		전	545	134		전	545	0	0	김*화외2인
394	옥도면	무녀도리	135		전	327	135		전	327	0	0	이*용
395	옥도면	무녀도리	136		잡종지	661	136		잡종지	661	0	0	임*순
396	옥도면	무녀도리	136	1	잡종지	3404	136	1	잡종지	4061.7	657.7	0	국(**재정부)
397							136	8	잡종지	288.8	288.8	0	국(**재정부)
398	옥도면	무녀도리	136	2	잡종지	1925	136	2	잡종지	1925	0	0	임*만
399	옥도면	무녀도리	136	3	잡종지	1487	136	3	잡종지	1182.4	0	-304.6	김*후
400	옥도면	무녀도리	136	4	잡종지	671	136	4	잡종지	671	0	0	임*만
401	옥도면	무녀도리	136	6	잡종지	1752	136	6	잡종지	1752	0	0	곽*성
402	옥도면	무녀도리	136	7	전	992	136	7	전	1055.5	63.5	0	최*복
403	옥도면	무녀도리	137		전	1002	137		전	1036.9	34.9	0	유*희
404	옥도면	무녀도리	137	1	도로	187	137	1	도로	284.5	97.5	0	국(**재정부)
405	옥도면	무녀도리	138		대	240	138		대	240	0	0	정*용
406	옥도면	무녀도리	138	1	대	235	138	1	대	249.9	14.9	0	나*하외1인
407	옥도면	무녀도리	138	2	전	49	138	2	전	49	0	0	임*만
408	옥도면	무녀도리	138	3	전	325	138	3	전	325	0	0	김*숙외2인
409	옥도면	무녀도리	139		전	198	139		전	213.1	15.1	0	박*봉
410	옥도면	무녀도리	140		전	426	140		전	439.2	13.2	0	박*환외1인
411	옥도면	무녀도리	226		염전	229	226		염전	229	0	0	박*훈
412	옥도면	무녀도리	227		답	1087	227		답	1099.7	12.7	0	송*섭

413	옥도면	무녀도리	240		도로	440	240		도로	718.3	278.3	0	국(*설부)
414	옥도면	무녀도리	산10 1		임야	992	137	2	임야	992	0	0	박*동
415	옥도면	무녀도리	산13 8		도로	397	137	3	도로	217.2	0	-179.8	국(**교통 부)
416	옥도면	말도리	21		대	248	21		대	248	0	0	차*향
417	옥도면	말도리	22		대	179	22		대	44.5	0	-134.5	박*열
418							22	1	대	75.3	75.3	0	박*열
419							22	2	대	17.9	17.9	0	박*열
420	옥도면	말도리	23		대	316	23		대	300.6	0	-15.4	***** *교회유 지재단
421	옥도면	말도리	23	1	대	120	23	1	대	90	0	-30	***** *교회유 지재단
422	옥도면	말도리	24		대	337	24		대	337	0	0	서*선
423	옥도면	말도리	26		전	169	26		전	169	0	0	이*철
424	옥도면	말도리	28		전	711	28		전	532.5	0	-178.5	박*열
425							28	4	전	87.2	87.2	0	박*열
426	옥도면	말도리	28	1	전	661	28	1	전	550.9	0	-110.1	박*애외1 인
427	옥도면	말도리	28	2	대	586	28	2	대	586	0	0	말*어촌 계
428	옥도면	말도리	28	3	도로	75	28	3	도로	75	0	0	박*열
429	옥도면	말도리	30		전	436	30		전	436	0	0	윤*용
430	옥도면	말도리	31		전	992	31		전	992	0	0	고*곤
431	옥도면	말도리	32		묘지	3402	32		묘지	3402	0	0	국(**부)
432	옥도면	말도리	33		전	298	33		전	298	0	0	고*곤외7 인
433	옥도면	말도리	34		전	714	34		전	355.6	0	-358.4	윤*만
434							34	1	전	311.1	311.1	0	윤*만
435	옥도면	말도리	35		대	561	35		대	565.3	4.3	0	김*석
436	옥도면	말도리	35	1	전	133	35	1	전	80	0	-53	김*석
437							35	2	전	14.4	14.4	0	김*석
438	옥도면	말도리	36		전	387	36		전	392.1	5.1	0	권*근
439	옥도면	말도리	37		대	329	37		대	308.6	0	-20.4	고*곤
440	옥도면	말도리	37	1	전	38	37	1	전	38	0	0	고*곤
441	옥도면	말도리	38		대	278	38		대	278	0	0	이*숙
442	옥도면	말도리	39		전	637	39		전	492.4	0	-144.6	김*
443	옥도면	말도리	39	1	전	183	39	1	전	248.7	65.7	0	김*
444	옥도면	말도리	39	2	전	271	39	2	전	330.2	59.2	0	김*
445	옥도면	말도리	40		대	278	40		대	340.6	62.6	0	이*자
446	옥도면	말도리	41		대	317	41		대	379.1	62.1	0	박*열
447	옥도면	말도리	42		대	248	42		대	232.7	0	-15.3	권*남
448	옥도면	말도리	43		대	129	43		대	129	0	0	윤*용
449	옥도면	말도리	44		대	228	44		대	237.2	9.2	0	권*배외3 인
450	옥도면	말도리	45		대	377	45		대	370.2	0	-6.8	조*한외1 인
451	옥도면	말도리	46		대	367	46		대	361.8	0	-5.2	고*만
452	옥도면	말도리	47		대	327	47		대	327	0	0	김*일
453	옥도면	말도리	48		대	377	48		대	377	0	0	백*현
454	옥도면	말도리	49		대	238	49		대	214.6	0	-23.4	권*근

455	옥도면	말도리	50		대	159	50		대	209.1	50.1	0	고*만
456	옥도면	말도리	51		대	288	51		대	240.3	0	-47.7	윤*산
457	옥도면	말도리	52		대	169	52		대	169	0	0	윤*성
458	옥도면	말도리	53		전	248	53		전	248	0	0	윤*성
459	옥도면	말도리	54		전	1061	54		전	1061	0	0	한*례
460	옥도면	말도리	70		전	1706	70		전	1706	0	0	이*우
461	옥도면	말도리	70	1	임야	529	70	1	임야	529	0	0	윤*선
462	옥도면	말도리	71		대	159	71		대	159	0	0	송*현
463	옥도면	말도리	72		대	322	72		대	322	0	0	김*희외3 인
464	옥도면	말도리	73		대	333	73		대	333	0	0	임*수
465	옥도면	말도리	74		대	230	74		대	230	0	0	안*철
466	옥도면	말도리	75		대	346	75		대	346	0	0	안*일
467	옥도면	말도리	76		대	371	76		대	324	0	-47	신*순
468	옥도면	말도리	76	1	임야	105	76	1	임야	86.9	0	-18.1	김*헌
469	옥도면	말도리	77		종교 용지	1520	77		종교 용지	1483.3	0	-36.7	대*예수 교장노회 **교회
470	옥도면	말도리	78		대	805	78		대	805	0	0	서*숙
471	옥도면	말도리	79		종교 용지	108	79		종교 용지	124.6	16.6	0	안*운
472	옥도면	말도리	80	1	대	394	80	1	대	364.5	0	-29.5	국(**청)
473	옥도면	말도리	81		대	356	81		대	199.1	0	-156.9	정*호
474	옥도면	말도리	82		대	90	82		대	118.8	28.8	0	안*운
475	옥도면	말도리	83		전	676	83		전	397.2	0	-278.8	정*호
476							83	10	전	137.8	137.8	0	정*호
477	옥도면	말도리	83	1	전	267	83	1	전	344.3	77.3	0	양*운
478	옥도면	말도리	83	2	대	324	83	2	대	324	0	0	김*훈
479	옥도면	말도리	83	3	대	285	83	3	대	285	0	0	양*선
480	옥도면	말도리	83	4	전	423	83	4	전	186.6	0	-236.4	박*녀
481	옥도면	말도리	83	5	전	1653	83	5	전	1718.1	65.1	0	조*길
482	옥도면	말도리	83	6	전	945	83	6	전	991.8	46.8	0	박*자
483	옥도면	말도리	83	9	전	141	83	9	전	29.9	0	-111.1	정*호
484	옥도면	말도리	84		전	105	84		전	71	0	-34	안*운
485	옥도면	말도리	85		전	294	85		전	376.2	82.2	0	서*금
486	옥도면	말도리	86		대	331	86		대	317.5	0	-13.5	조*순
487	옥도면	말도리	87		대	337	87		대	370.4	33.4	0	박*문
488	옥도면	말도리	88		전	738	88		전	655.4	0	-82.6	이*숙
489	옥도면	말도리	89		대	402	89		대	439.4	37.4	0	안*순
490	옥도면	말도리	89	1	도로	65	89	1	도로	65	0	0	박*희
491	옥도면	말도리	89	2	임야	331	89	2	임야	285.1	0	-45.9	신*녀
492	옥도면	말도리	89	3	대	184	89	3	대	346.3	162.3	0	안*희
493	옥도면	말도리	89	4	대	594	89	4	대	594	0	0	박*희
494	옥도면	말도리	89	5	임야	187	89	5	임야	187	0	0	박*희
495	옥도면	말도리	89	6	임야	1031	89	6	임야	1045.2	14.2	0	박*창외2 인
496	옥도면	말도리	89	7	임야	71	89	7	임야	71	0	0	박*희
497	옥도면	말도리	90		답	595	90		답	539.8	0	-55.2	이*수
498	옥도면	말도리	91		전	3005	91		전	2897.8	0	-107.2	김*문
499	옥도면	말도리	94		전	1342	94		전	1031	0	-311	군*시**업 협동조합
500	옥도면	말도리	95		전	218	95		전	557.8	339.8	0	군*시**업

501	옥도면	말도리	96		도로	625	96		도로	718.6	93.6	0	협동조합 군*시**업
502	옥도면	말도리	97		대	3862	97		대	3862	0	0	협동조합 방*도마 을회
503	옥도면	말도리	100	1	전	205	100	1	전	283.1	78.1	0	방*도마 을회
504	옥도면	말도리	101		전	1722	101		전	1619.4	0	-102.6	협동조합 군*시**업
505	옥도면	말도리	106		대	298	106		대	437	139	0	김*문
506	옥도면	말도리	110		답	2499	110		답	2499	0	0	김*곤외4 인
507	옥도면	말도리	111		전	774	111		전	774	0	0	김*곤외4 인
508	옥도면	말도리	112		전	2261	112		전	2261	0	0	김*곤외4 인
509	옥도면	말도리	113		전	139	113		전	137.7	0	-1.3	김*곤외4 인
510	옥도면	말도리	114		전	264	114		전	367	103	0	김*곤외4 인
511	옥도면	말도리	115		전	4691	115		전	4736.9	45.9	0	협동조합 군*시**업
512	옥도면	말도리	116		대	142	116		대	119.2	0	-22.8	김*곤외4 인
513	옥도면	말도리	117		전	417	117		전	429.6	12.6	0	김*곤외4 인
514	옥도면	말도리	118		대	433	118		대	446.3	13.3	0	협동조합 군*시**업
515	옥도면	말도리	119		전	1808	119		전	1641	0	-167	협동조합 군*시**업
516	옥도면	말도리	120		대	129	120		대	129	0	0	김*곤외4 인
517	옥도면	말도리	121	1	답	1044	121	1	답	1044	0	0	신*순
518	옥도면	말도리	125		답	663	125		답	663	0	0	조*일
519	옥도면	말도리	125	2	전	3372	125	2	전	3205.2	0	-166.8	협동조합 군*시**업
520	옥도면	말도리	126		답	990	126		답	722.8	0	-267.2	조*호
521	옥도면	말도리	127		전	595	127		전	655	60	0	최*희
522	옥도면	말도리	128		임야	1286	128		임야	963.3	0	-322.7	김*만외2 인
523	옥도면	말도리	128	1	임야	205	128	1	임야	190.1	0	-14.9	조*희
524	옥도면	말도리	128	2	임야	102	128	2	임야	111	9	0	이*현
525	옥도면	말도리	128	3	임야	168	128	3	임야	219.3	51.3	0	권*경
526	옥도면	말도리	128	4	임야	297	128	4	임야	297	0	0	고*현외2 인
527	옥도면	말도리	128	5	임야	481	128	5	임야	481	0	0	오*나
528	옥도면	말도리	128	6	임야	347	128	6	임야	391.6	44.6	0	최*
529	옥도면	말도리	128	7	임야	188	128	7	임야	264.9	76.9	0	최*영
530	옥도면	말도리	129		전	985	129		전	925	0	-60	김*임외1 인
531	옥도면	말도리	130		대	660	130		대	504.1	0	-155.9	최*열
532							130	2	대	92.7	92.7	0	최*열
533	옥도면	말도리	130	1	전	331	130	1	전	331	0	0	김*민
534	옥도면	말도리	131		전	383	131		전	309	0	-74	김*민
535	옥도면	말도리	131	5	답	1704	131	5	답	1659	0	-45	협동조합 군*시**업
536	옥도면	말도리	131	6	전	930	131	6	전	786.6	0	-143.4	군*시**업

													협동조합	
537	옥도면	말도리	131	10	전	249	131	10	전	249	0	0	오*나	
538	옥도면	말도리	131	11	전	307	131	11	전	307	0	0	최*영	
539	옥도면	말도리	132		전	903	132		전	463.8	0	-439.2	이*현	
540	옥도면	말도리	132	2	전	198	132	2	전	198	0	0	군*시**업 협동조합	
541	옥도면	말도리	133		전	178	133		전	136.2	0	-41.8	양*식	
542	옥도면	말도리	133	1	전	421	133	1	전	426.9	5.9	0	최*주	
543	옥도면	말도리	133	2	대	359	133	2	대	359	0	0	윤*만외1 인	
544	옥도면	말도리	133	3	전	158	133	3	전	89.6	0	-68.4	최*만외1 인	
545	옥도면	말도리	133	4	전	100	133	4	전	84.7	0	-15.3	양*식	
546	옥도면	말도리	133	5	대	162	133	5	대	212.1	50.1	0	양*식	
547	옥도면	말도리	133	6	전	12	133	6	전	12	0	0	양*식	
548	옥도면	말도리	133	7	대	629	133	7	대	629	0	0	윤*만외1 인	
549	옥도면	말도리	133	8	대	432	133	8	대	432	0	0	박*님	
550	옥도면	말도리	133	9	도로	8	133	9	도로	1.5	0	-6.5	양*식	
551	옥도면	말도리	133	10	도로	46	133	10	도로	30.6	0	-15.4	박*님	
552	옥도면	말도리	134		답	546	134		답	546	0	0	정*숙	
553	옥도면	말도리	134	1	답	543	134	1	답	135.6	0	-407.4	김*민	
554	옥도면	말도리	134	2	답	910	134	2	답	965	55	0	김*민	
555	옥도면	말도리	134	3	답	778	134	3	답	858.4	80.4	0	유*선	
556	옥도면	말도리	134	4	답	100	134	4	답	100	0	0	김*민	
557	옥도면	말도리	135		답	910	135		답	910	0	0	김*민	
558	옥도면	말도리	135	1	답	962	135	1	답	962	0	0	김*민	
559	옥도면	말도리	135	2	답	46	135	2	답	46	0	0	김*민	
560	옥도면	말도리	136		답	3043	136		답	3050	7	0	최*영	
561	옥도면	말도리	136	1	답	5185	136	1	답	5185	0	0	김*현외2 인	
562	옥도면	말도리	136	2	답	1404	136	2	답	1404	0	0	이*일	
563	옥도면	말도리	136	3	답	2070	136	3	답	2070	0	0	김*미	
564	옥도면	말도리	136	4	답	1404	136	4	답	1404	0	0	이*선	
565	옥도면	말도리	137		전	6175	137		전	6175	0	0	김*연외2 인	
566	옥도면	말도리	137	1	전	473	137	1	전	473	0	0	김*연외2 인	
567	옥도면	말도리	137	2	전	651	137	2	전	651	0	0	김*연외2 인	
568	옥도면	말도리	138		대	251	138		대	251	0	0	이*선외1 인	
569	옥도면	말도리	139		대	167	139		대	167	0	0	이*선외1 인	
570	옥도면	말도리	140		대	640	140		대	640	0	0	김*단외2 인	
571	옥도면	말도리	140	1	대	668	140	1	대	668	0	0	김*단외2 인	
572	옥도면	말도리	141		전	496	141		전	496	0	0	최*태	
573	옥도면	말도리	142		도로	505	142		도로	711.9	206.9	0	국(**재정 부)	
574							142	1	도로	208.6	208.6	0	국(**재정 부)	
575							142	2	도로	2673.9	2673.9	0	국(**재정 부)	
576							142	3	도로	1137.6	1137.6	0	국(**재정 부)	

										6		부)		
577						142	4	도로	50.5	50.5	0	국(**재정부)		
578	옥도면	말도리	152		잡종지	1682	152	잡종지	1682	0	0	국(**수산부)		
579	옥도면	말도리	152	1	목장용지	330	152	1	목장용지	330	0	0	김*한	
580	옥도면	말도리	152	2	임야	105	152	2	임야	399	294	0	이*수	
581	옥도면	말도리	152	3	목장용지	597	152	3	목장용지	504.7	0	-92.3	노*준	
582	옥도면	말도리	152	5	임야	763	152	5	임야	699.8	0	-63.2	노*준	
583	옥도면	말도리	152	7	목장용지	661	152	7	목장용지	631.9	0	-29.1	신*진외1인	
584	옥도면	말도리	152	8	목장용지	993	152	8	목장용지	993	0	0	최*희	
585	옥도면	말도리	152	9	임야	118	152	9	임야	121.6	3.6	0	이*수	
586	옥도면	말도리	152	10	목장용지	257	152	10	목장용지	282.3	25.3	0	이*수	
587	옥도면	말도리	152	11	목장용지	250	152	11	목장용지	250	0	0	최*희	
588	옥도면	말도리	152	12	임야	154	152	12	임야	166.6	12.6	0	최*희	
589	옥도면	말도리	153		대	330	153		대	384.3	54.3	0	두*정	
590	옥도면	말도리	154		임야	257	154		임야	257	0	0	정*미	
591	옥도면	말도리	155		임야	330	155		임야	354.5	24.5	0	원*이	
592	옥도면	말도리	157		임야	188	157		임야	320.1	132.1	0	석*현	
593	옥도면	말도리	158		임야	330	158		임야	345.5	15.5	0	추*길	
594	옥도면	말도리	159		임야	330	159		임야	373.5	43.5	0	안*숙	
595	옥도면	말도리	160		임야	222	160		임야	225.6	3.6	0	군*시**업협동조합	
596	옥도면	말도리	161		임야	330	161		임야	376.8	46.8	0	이*수	
597	옥도면	말도리	162		임야	98	162		임야	146.3	48.3	0	군*시**업협동조합	
598	옥도면	말도리	163		임야	330	163		임야	423.7	93.7	0	최*금	
599	옥도면	말도리	164		임야	330	164		임야	359.9	29.9	0	고*순	
600	옥도면	말도리	165		임야	330	165		임야	330	0	0	안*실	
601	옥도면	말도리	166		임야	236	166		임야	623.9	387.9	0	조*호	
602	옥도면	말도리	167		임야	330	167		임야	330	0	0	윤*승	
603	옥도면	말도리	168		임야	330	168		임야	420.6	90.6	0	김*호	
604	옥도면	말도리	169		임야	315	169		임야	358.1	43.1	0	추*철	
605	옥도면	말도리	170		임야	330	170		임야	362.2	32.2	0	김*천	
606	옥도면	말도리	171		임야	330	171		임야	369.2	39.2	0	재*법인 기독교대 한성결교 회유지재 단	
607	옥도면	말도리	172		임야	224	172		임야	224	0	0	신*철	
608	옥도면	말도리	173		임야	48	173		임야	48	0	0	군*시**업협동조합	
609	옥도면	말도리	174		임야	276	174		임야	295.7	19.7	0	이*철	
610	옥도면	말도리	175		임야	130	175		임야	130	0	0	방*도어 촌계	
611	옥도면	말도리	176		임야	249	176		임야	282.5	33.5	0	최*희	
612	옥도면	말도리	177		임야	110	177		임야	220.9	110.9	0	군*시**업협동조합	
613	옥도면	말도리	178		임야	123	178		임야	134	11	0	신*호	

614	옥도면	말도리	178	1	임야	2173	178	1	임야	2174.2	1.2	0	군*시
615	옥도면	말도리	산11 5	4	임야	2131	90	2	임야	1604.6	0	-526.4	이*수
616							90	4	임야	212.9	212.9	0	이*수
617	옥도면	말도리	산11 5	5	임야	1551	90	1	임야	1262.5	0	-288.5	박*창외2 인
618	옥도면	말도리	산11 5	7	임야	371	73	4	임야	371	0	0	박*론
619	옥도면	말도리	산11 5	12	임야	427	70	6	임야	427	0	0	이*우
620	옥도면	말도리	산11 5	18	임야	2358	78	1	임야	2358	0	0	서*숙
621	옥도면	말도리	산11 5	33	임야	1486	73	2	임야	1474.6	0	-11.4	전*북도(교육감)
622	옥도면	말도리	산11 5	34	임야	203	73	3	임야	212.6	9.6	0	전*북도(교육감)
623	옥도면	말도리	산11 5	35	임야	302	73	1	임야	302	0	0	김*배외2 인
624	옥도면	말도리	산11 5	41	임야	313	83	11	임야	313	0	0	양*선
625	옥도면	말도리	산11 5	45	임야	9534	80	2	임야	7067.1	0	-2466. 9	조*길
626	옥도면	말도리	산11 5	53	임야	560	85	1	임야	560	0	0	박*진
627	옥도면	말도리	산11 5	58	임야	353	90	3	임야	335.6	0	-17.4	박*희
628	옥도면	말도리	산11 5	60	임야	2223	74	1	임야	2223	0	0	강*희외3 인
629	옥도면	말도리	산12 8	1	임야	2975	111	2	임야	2975	0	0	양*용외2 인
630	옥도면	말도리	산12 8	7	임야	6645	111	1	임야	6647.9	2.9	0	박*주외3 인
631	옥도면	말도리	산13 0	1	임야	2678	125	5	임야	1883.8	0	-794.2	전*북도(교육감)
632							125	6	임야	611.5	611.5	0	전*북도(교육감)
633	옥도면	말도리	산13 8	3	임야	992	173	2	임야	177.3	0	-814.7	이*석외1 인
634							173	3	임야	708.6	708.6	0	이*석외1 인
635	옥도면	말도리	산13 8	7	임야	1145	133	11	임야	1145	0	0	이*배외1 인
636	옥도면	말도리	산13 8	8	임야	161	133	12	임야	161	0	0	이*배외1 인
637	옥도면	말도리	산13 8	22	임야	1513	173	1	임야	1476	0	-37	이*배외1 인
638	옥도면	말도리	산13 8	23	임야	226	133	13	임야	226	0	0	최*일
639	옥도면	말도리	산13 8	24	임야	319	133	14	임야	319	0	0	윤*만외1 인
						이	하	여	백				

군산시 공고 제2020-2254호

제234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부 의 안 건 -

연 번	안 건 명
1	군산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군산시 아·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산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6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산시 상생형지역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안
8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군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군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군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기금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군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7	군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군산시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군산시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군산시장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군산시 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재) 군산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4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11월 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20 - 2257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지곡동 33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집)2-16호선)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0년 11월 일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3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지곡동 중로(집)2-16호선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1) 중로2-16 : L=948m, B=15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효자동, 전라북도 교육청)

2) 사업시행자 성명 : 전라북도 교육감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9. 29.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4-3523, 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군산시 지곡동	123-2	제방	852	206	국(농수산부)					
2	"	334-2	제방	17	17	국(기재부)					
3	"	335	전	1,358	425	차*순	군산시 계산로71, 108동101호 (지곡 동 쌍용예가아파 트)				
4		336-1	답	340	14	고*영	군산시 미장13길 33, 108동 2305 호(미장동,제일풍 경채아파트)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지분 1/4
						홍*화	군산시 미장13길 33, 108동 2305 호(미장동,제일풍 경채아파트)				지분 1/4
						고*호	군산시 미장13길 33, 108동 2305 호(미장동,제일풍 경채아파트)				지분 1/4
						고*민	서울특별시 강서 구 마곡서1로 115-1, 510호 (마곡동, 마곡해 리움1차)				지분 1/4
5	"	336-2	제방	162	158	김*향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24-15 뉴월드빌라 101호				
6	"	337-3	유	347	347	국(농수산부)					
7	"	산92-2	임	230	230	전라북도교육감					
8	"	334-3	전	45	45	전라북도교육감					
9	"	336-3	유	123	123	전라북도교육감					